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자녀의 청년 빈곤가구 이행 :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의 다중매개효과

김 원 정* · 류 진 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77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며 이슈화 된 소득 1분위 청년 빈곤가구의 발생 경로를 기초보장제도 맥락 하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년 가구로 이행한 수급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에 대한 다중매개모형을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 빈곤가구로 이행한 수급가구 자녀의 비율은 비수급가구 자녀에 비해 2.92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수급가구의 가족 배경이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는 교육연수의 단일한 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와, 이른 가구분리와 교육연수의 다중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가 각각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연구는 수급가구에 머무는 아동기 자녀에게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보장가구로부터 분리된 청년 자녀에게 탈수급과 연동되는 완충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연장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주요용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이른 가구분리, 교육, 빈곤이행

1. 서론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30세 미만 가구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78만 1천원으로 나타나 저소득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경향신문, 2017.12.26일자). 이른바 77만원 세대로 불리우며 이슈화 된 청년 빈곤 문제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는데, 김수정(2010)과 김태완·최준영(2017)은 청년 세대를 세분화할 경우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청년층에서, 가구형태별로는 단독가구에서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 가운데 김수정(2010)은 우리나라 청년 빈곤 문제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자녀의 문제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와 독립된 가구를 형성한 청년가구의 문제로 이원화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빈곤한 청년가구로서 77만원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김수정(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빈곤층의 42.1%는 독립된 청년에게서 발생하고, 빈곤한 청년가구의 가구주는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특성을 보였다. 청년가구의 이와 같은 경제적 취약성은 초기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져 18-24세 빈곤가구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8.8만원으로 매우 낮았고, 65세를 제외하면 18-24세가 가구주가 될 때 빈곤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수정, 2010).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청년기 가구분리는 빈곤의 위험을 높인다(Iacovou & Berthoud, 2001; Aassve et al., 2002; Aassve et al., 2005; Parisi, 2008; 김수정 · 김영, 2013). 독립이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조건과 주거상태 등과 긴밀히 맞물린 실천임을 상기할 때(정민우 · 이나영 2011: 113), 특별히 준비되지 못한 이른 독립은 교육성취를 방해함으로써 빈곤에 이르는 경로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원가구에서 분리된 이후 주거공간에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박애리 외, 2017),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거나 중퇴하는 등 학업을 연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2017). 학력별 임금격차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최동선, 2010; 박소영, 2015), 때이른 연령에 가구주가 되는 것은 저학력으로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관련될 수 있어 주목되고(김수정, 2010), 가족자원이 부족한 이들은 시간적 빈곤에 시달리며 일관성 있는 경력을 축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재욱 외,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빈곤한 청년가구의 이행은 청년 전체를 둘러싼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들과는 별개로 이들이 왜 부모와의 동거를 연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캥거루족과 같은 사회적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빈곤의 방어에 가족주의 전략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빈곤한 가구를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빈곤과 가족해체는 원가구 분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Goldscheider & Goldscheide, 1998). 연구들에 따르면 청년들의 이른 독립, 특별히 준비되지 못한 독립가구의 형성에는 빈곤한 가족배경과 함께, 부모가 이혼을 하였거나 거주할 공간이 없는 등 경제적 결핍과 관련된 특정한 계기가 결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소영, 2017; 박애리 외, 2017). 이는 학업이나 경력 축적을 목적으로 생계를 분리하지 않은 채 부모와 비동거하는 사례들과 구별되는데, 비혼 20-30대를 대상으로 독립의 의미를 분석한 정민우 · 이나영(2011: 105)은 빈곤층 가족이 청년세대를 가족 제도로부터 밀어내는데 비해, 중산층 가족은 청년 자녀에게 부분적인 독립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였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까닭에 교육의 연장이 요원한 빈곤층 자녀와 달리 중산층 자녀에게 청년기는 가족적 관리의 시기로 교육의 투자가, 이를 태면 공부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주거공간에 대한 투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정민우 · 이나영, 2011: 126).¹⁾

1) 실제로 부모의 높은 수입이 자녀가 집을 떠나 학교에 갈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Nave-Herz, 1997; Raymore et al., 2001; Le Blanc & Wolff, 2006; 김원정 · 류진석, 2017a 재인용). 하지만 학업으로 인한 비동거는 경제적 의미의 독립과 구분되며, 이러한 형태의 비동거는 본 연구의 가구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의 이른 가구분리가 기초보장의 제도적 배경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어 주목된다(김원정·류진석, 2017b). 이는 기초보장제도에서 수급가구 자녀들이 가구분리를 통해 보충급여 체계 밖에서 근로임금을 보존할 수 있는 동시에, 성인 도래기에 부과되는 추정소득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이태진 외, 2007: 391; 김소정, 2014: 360). 가구분리를 선택한 수급가구 자녀의 절대적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김원정·류진석(2017b)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연령인 19세 수급자가 20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로의 이행률이 68.9%로 가장 낮았고, 이전 연령 대비 이행률이 80%에 못 미치는 구간은 92세 이상 초고령층을 제외하고는 19-25세 구간이 유일하였다. 경험적으로 공공부조 수급가구 자녀는 비수급 자녀에 비해 더 이른 연령에 가구에서 분리된다는 점이 실증되기도 하였다(DeMarco & Berzin, 2008; Berzin & DeMarco, 2010; 김원정·류진석, 2017a).

최근 기초보장제도는 은닉된 소득에 대한 확인 없이 근로능력자 도래의 인구학적 기준에 부과되는 추정소득 지침을 개선하였고(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925(2014.9.2); 보건복지부, 2015b: 135 재인용;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5.9.24일자), 청년의 자립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을 한 청년이 보장가구에 머무는 기간에 대한 유예를 확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부, 2018).²⁾ 하지만 기초보장 수급가구 자녀들은 빈곤한 가족배경으로 인해 여전히 교육성취와 부모와의 동거에 취약할 수 있고, 2015년 제도 개선 이전까지 일찍부터 가구분리를 선택하여 온 어린 자녀들이 독립한 청년 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자녀를 교육의 연장선과 이른 가구분리에 취약한 빈곤한 가족배경과 제도적 배경을 동시에 지닌 대상으로 주목하고, 교육을 매개로 한 전통적인 빈곤 이행 모형에 가구분리 연령을 결합하여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만일 수급가구 자녀들이 현재 횡단면 시점에 빈곤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빈곤한 가족 배경 뿐 아니라 소득보장정책의 사각지대로 청년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수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수급가구 자녀의 가구분리

가. 제도적 배경과 가구분리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초보장의 제도적 배경이 이른 가구분리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2)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자녀의 가구 내 동거를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다가(보건복지부, 2015a), 대상자 범위, 가구 내 동거 기간, 소득 활동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두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보충급여 체계로 운영되는 기초보장제도에서 가구분리를 통해 근로임금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초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사업안 내 지침에 따라 30세 미만 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여 왔다(보건복지부, 2017: 33; 김원정·류진석, 2017b 재인용). 이는 청년 자녀가 보장가구로부터 분리를 통해 보충급여 체계 밖에서 순임금을 보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행정 능력에 한계가 있고(구인회, 2005), 주거지 분리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가구 자녀가 이른 연령에 가구분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추정소득 부과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 2015년 9월 제도 개선 이전까지 기초보장 제도에서는 근로능력자라는 인구학적 기준에 추정소득이 부과될 수 있어 성인 도래 자녀들에게 가구분리는 나머지 가구의 수급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었다(이태진 외, 2007: 391; 김소정, 2014: 360; 김원정·류진석, 2017b 재인용). 경험적으로도 수급가구 자녀가 더 많이 더 이른 연령에 가구에서 분리된다는 점은 실증되었는데, 수급가구 자녀에게 성인 도래 기준인 졸업이 발생하는 연도에 가구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졸업이 발생하지 않은 비수급가구 자녀에 비해 19.341배 높고, 가구분리 연령은 3.887세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정·류진석, 2017a). 수급자 내부적으로도 근로능력자 도래의 제도적 기준인 졸업이나 중퇴는 가구전체의 수급 탈락이 아닌 가구분리 탈락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가구분리 탈락자에게는 추정소득이 부과될 수 있는 졸업(중퇴) 직전 구간에서만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양상이 확인되었다(김원정·류진석, 2017b).

나. 빈곤한 가족배경과 가구분리

매우 이른 연령의 가구분리는 빈곤과 맞물린 어떤 계기, 특별히 가족해체 등과 같은 원가구 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수남 외(2012)는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집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더 빨리 성인기에 도달한다는 주장이 있고 이러한 특성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고 보았다. 즉 기초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빈곤한 환경에서 자란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매우 앞당겨 생각하는 특징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가정해체를 경험한 청년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하층계급이 가족주의를 재생산하는 방식을 시사한다고 보았는데, 그 방식이란 빈곤과 빈곤한 환경에서 경험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문제임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청년 노숙인들에 대한 김소영(2017)의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지나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채 빠른 독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들의 독립은 직접적으로 가족이 살던 집,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가족에게 처해진 상황 등과 밀접히 연관되고, 이는 구체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이 없어서 버리거나 집에서 쫓겨나가거나 집을 무작정 나와 버리는 상황으로 정리되

고 있다(김소영, 2017).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고시원 등에 거주하였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박애리 외(2017)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 형편이 못 되어 이른 나이에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만 청년들의 삶이 보고되고 있다.

2. 교육성취 영향요인

가. 가족배경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빈곤한 가족배경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구인회(2003)의 연구에서는 19세 시점 학력연수와 대학진학가능성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소득과 빈곤 여부의 가족배경은 19세 시점 학력연수와 대학진학가능성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고, 소득구간별로 최저생계비 100% 미만의 빈곤층은 빈곤선 100% 이상 200% 미만의 소득집단에 비해 학력연수와 대학진학가능성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한 구인회·김정은(2015)의 연구에서도 고교시절 가족 소득은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학업성취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또한 발달시기별로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의 교육관여에 따라 고교시절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장기간 누적된 가족소득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빈곤한 가족배경은 진학하는 대학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2015)은 한국교육고용패널을 활용하여 전문고 졸업자의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빈곤한 가족배경은 대학 진학 이후의 교육성취에도 영향을 미쳤다. 30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인터뷰 한 정수남 외(2012)는 일찍부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 진학 이후 전공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자퇴하거나,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대학을 중퇴하는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다.

나. 가족배경이 가구분리를 매개로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빈곤과 가족 해체는 청년들이 이른 나이에 집을 떠나 자신을 부양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다(Goldscheider & Goldscheide, 1998; 김원정·류진석, 2017a 재인용). 특히 가구분리에 따르는 불안정한 주거의 문제는 학교를 지속하는 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Courtney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 연령이 21세로 연장된 위탁보호아동은 18세에 위탁보호가정을 떠나야 하는 대상자 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SSP, 2016: 19; 김원정·류진석, 2017a 재인용).

가구분리 연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청년들은 원가구로부터 분리된

이후 교육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년 노숙자에 대한 김소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원가족의 물질적 지원의 부재는 생각보다 중대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분석대상자 8명 가운데 2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퇴해야 했고, 고졸로 학업을 마감한 사례자 역시 자신이 공부를 더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부모의 도움 없이 가구분리 이후 주거비를 책임지는 청년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박애리 외(2017)의 연구에서도 원가족의 빈곤한 배경에서 발생한 계기로 독립을 선택해야 한 대상자 중 3명이 주거비 부담 등의 문제로 미래에 대해 계획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만 19-34세 고졸 청년 14명을 면접한 남재욱 외(2018)의 연구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대상자를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가족자원이 부족하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상자의 인터뷰 중에는 경제적 압박과 시간적 빈곤으로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청년 빈곤 영향요인

가. 교육성취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다수의 연구들이 교육과 경제적 성과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왔다. 박동열 외(2010)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08년 학력별로 나타나는 시간당 임금의 상대적 차이를 일반계 고졸 100, 전문계 고졸 104.3, 전문대 117로 분석하였고, 최동선(2010)은 2010년 학력별 월평균 임금의 격차를 전문고 졸업자가 100, 전문대 졸업자 110.5, 대학 졸업자 128.3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전문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 요인을 분석한 김성훈(2015)도 대학 진학 유형별로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전문고 졸업에 비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 보다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980-2012년 원자료를 분석한 박소영(2015)의 연구에서는 중·고·초대졸의 경우 실질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미미한 반면 대졸 이상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크고 이러한 임금 격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30여년간 교육연수의 교육투자수익률은 5-9%로 추정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 빈곤에 대한 김수정·김영(2013)의 연구에서도 양국 모두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국의 경우 고졸에 비해 대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에 속할 확률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 가족배경이 교육을 매개로 빈곤에 미치는 영향

빈곤한 가족배경이 청년 자녀의 빈곤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실증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족소득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최필선·민인식(2015)은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대학 진학과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소득 수준

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과 청년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 소득이 소득 5분위에 속하면 1분위에 비해 자녀 임금이 19%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부모 배경 변수가 임금 불균등을 설명하는 정도는 3.0-3.5%로 추정되었다. 변금선(2015)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의 노동시장 소득 수준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원가구 소득이 1분위 자녀에 비해 소득 4분위와 5분위 자녀의 임금수준이 높고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수준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원가구 소득이 청년 자녀의 중위임금 2/3 미만 저임금근로 가능성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소득 4분위가 5.6%, 소득 5분위가 9.2%로 나타났다. 김종성·이병훈(2013)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소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의 계층지위는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득과 직업지위가 독자적인 세대승계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빈곤한 가족배경이 자녀의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빈곤이행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한 임은의(2017)의 연구에서 부모의 빈곤은 자녀의 빈곤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녀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노동시장지위를 완전 매개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손병돈(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빈곤이 성인 자녀 빈곤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교육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들 두 연구는 각각 부모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회상 정보가 있는 전 연령층의 가구주와 31-41세의 독립한 성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층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본 연구와 다르다. 빈곤한 가족배경이 교육, 특히 대학 교육을 매개하여 청년층의 빈곤을 재생산한다는 논의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행기 청년 20명을 심층 분석한 김영·황정미(2013)의 질적 연구에서는 하층계급 청년들은 학비마련을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거나 등록금 용자로 인한 빚 부담에 장기휴학으로 대학 졸업장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기술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중에는 취업 후 학력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가족의 지원 없이 충당해야 하는 청년들은 학업과 생계형 취업을 반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빈곤이 재생산되고 있었다(김영·황정미, 2013).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4-20차년도 자료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19차년도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로 해당연도의 소득정보가 있어 빈곤 판정이 가능하고, 가구분리 직전 가구주와의 관계가 (손)자녀, 부모형제, 기타 동거인인 대상자로 하였다.³⁾ 19차년도 인구학적 기준과 일치하는 소득 정보의 확인을 위해 20차년도 자료에서 조사된 작년 한 해 소득정보를 확인하였으며,⁴⁾ 그 밖에 개인별로 각기 다른 가구분리 직전 수급가구 여부, 가구분리 연령, 교육연수를 파악하기 위해 4차년도부터 19차년도까지 자료를 연결하여 활용하였다.

2. 주요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19차년도(2016년도) 기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빈곤 여부이다. 이를 위해 20차년도 자료에서 조사된 작년 한 해(201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가구를 소득 5분위로 구분하고, 1분위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2-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비빈곤가구로 판정하였다. 분석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균등화 한 가구 경상소득이었으며, 균등화 지수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다. 가구 경상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진소득의 합으로 하되(한국노동연구원, 2018: 59ff), 통계청 기준에 따라 금융소득 중 주식배당이 아닌 매매하여 얻은 수입과 부동산 소득 중 부동산(주택, 토지) 등의 매각대금 항목은 제외하였다(통계청, 2017: 114).⁵⁾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기초보장 수급가구 자녀 여부는 4차년도부터 19차년도까지 연결한 자료에서 가구분리 직전 원가구의 기초보장제도 수급여부를 개인별로 확인함으로써 변수화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조사 이후 기초보장제도 보호대상 여부, 기초보장제도 보호 시작 및 종료연도, 작년 한 해 기초보장제도 수급액의 세 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검토하였다. 수급가구 자녀로의 판정은 지난 조사 이후 기초보장제도 보호대상으로 응답하였거나 작년 한 해 기초보장 지원금이 있는 경우로 하되,⁶⁾ 보호 시작연도와 종료연도 응답을 활용하여 연도별로 판정 내용을 달리하였다. 즉 지난 조

3) 원가구 분리 이전 가구 내 지위는 (손)자녀가 94.79%로 대다수이지만, 형제자매와 기타동거인 5.21%의 대상자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빈곤한 가구일수록 가구주와의 관계가 (조)부모 외에 다른 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노동패널조사는 소득정보는 조사시점에서 작년 한해의 것을, 인적정보는 조사시점의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접한 2개년도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석상훈, 2009: 82 참조).

5)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이들은 기타수입(비경상소득)에 해당한다(석상훈, 2009: 82).

6) 8차년도 이전까지는 지원금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 기초보장제도 보호대상자 여부를 질문하지 않으므로

사 이후 기초보장 보호 대상자이었으나 수급자격이 종료된 연도가 지난 해인 경우 당해연도가 아닌 이전연도에만 수급자격을 부여하였다.

다. 매개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 두 가지이다.

먼저 첫 번째 매개변수인 가구분리 연령은 가구주와의 관계가 (손)자녀, 형제자매, 기타동거인의 대상자가 가구주로 변경된 시점의 만 연령을 사용하였다. 주지할 점은 본 연구에서 가구분리는 비경제적인 독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계를 분리하지 않은 채 취업, 학업 등으로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상자는 가구분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가구분리를 경제적 독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수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패널조사가 비동거와 분가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고,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가구분리는 노동패널조사의 분가에 해당한다.⁷⁾

두 번째 매개변수인 교육연수는 청년층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 연장을 고려하기 위해 최종학력이 아닌 학교에 재학한 교육연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차년도부터 19차년도까지 연결된 노동패널자료에서 학교, 재학 상태, 학년 변수를 검토하여 교육연수 변수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19차년도 기준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대상자가 19차년도 이전 기간에 4년제 대학을 다닌 이력이 있는 경우 대학 재학기간은 전문대 1년과 4년제 대학 4년을 합친 총 5년으로 환산하였다. 유사하게 4년제 대학 졸업 직후 연속적으로 대학 3학년과 4학년에 다시 재학한 대상자는 대학 재학기간을 6년으로 환산하였다.⁸⁾ 이에 비해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자로서 첫 관측값에 최종학력이 제시된 이후 학력에 변화가 없거나, 재학 상태 등의 변수가 누락되어 교육연수에 대한 이력의 검토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대상자는 19차년도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교육연수를 변수화하였다. 최종학력에 따라 교육연수를 결정하는 경우, 무학은 0년,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졸업은 3년, 고등학교 졸업은 3년, 전문대 졸업 2년, 4년제 대학 졸업 4년, 석사 졸업 2년의 값을 부여하여 교육연수를 환산하였다.

이상 본 연구의 분석변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지원금 수급 이력만으로 기초보장 수급여부를 판정하였다.

7) 노동패널조사의 가구용 설문지의 면접원 주지사항에 따르면, 분가란 원가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따로 떨어져 사는 관계가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며,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따로 살게 되거나 자녀가 장성하여 독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8) 이러한 사례들은 대학 졸업 이후 다른 대학에 편입한 사례로 유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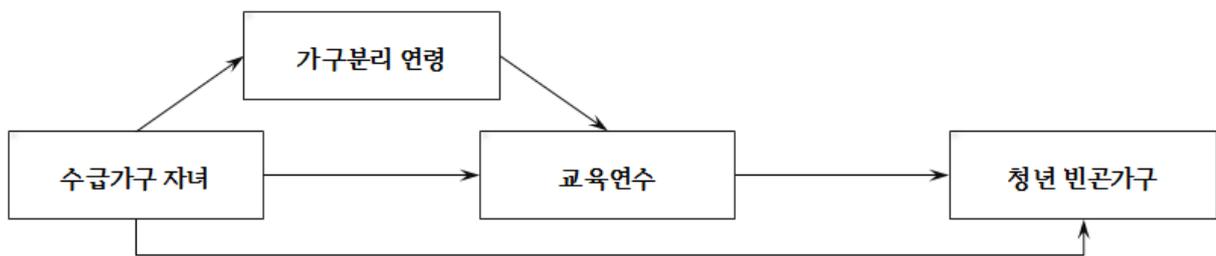
<표 2> 분석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빈곤가구 여부(2016년도 기준)	0.비빈곤(2-5분위)	1.빈곤(1분위)
독립변수	수급가구 자녀 여부(가구분리 직전 원가구)	0.비수급가구 자녀	1.수급가구 자녀
매개변수	가구분리 연령	청년가구 가구주로 독립한 만 연령(세)	
	교육연수(2016년도 기준)	2016년 최종학력까지 교육 받은 연수(년)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자녀의 빈곤이행에 대한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tata 13.0을 활용하여 분석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분석 변수 간 상관분석을 통해 독립 및 매개 변인 간 상관관계 정도를 검토하여 변인들 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을 마친 후에는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대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빈곤가구 이행 여부의 이분형 변수를 종속변인으로 가지므로, 경로모형의 추정을 위해 Mplus 7.0을 활용하여 범주형 변수에 강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WLSMV 방식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적합도에 대한 검정 이후에는 세부 경로별 영향력을 추정하였으며, 편향 조정 부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의 매개변인들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⁹⁾



[그림 1] 연구모형

9) 간접효과의 점추정치와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의 추정에 있어서 편향 조정 부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김수영, 2016: 203).

IV.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3>에서는 수급가구 자녀 여부에 따라 분석변수와 분석대상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분석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청년 가구주 359명 가운데 가구분리 전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자녀였던 대상자는 전체의 5.57%이었다. 가구분리 평균 연령은 수급가구 자녀가 22.80세(표준편차 4.31)로 비수급가구 자녀의 26.56세(표준편차 3.14) 보다 3.76세 낮았다. 가구분리 연령구간별로 수급가구 자녀의 경우 20세 미만에 가구분리를 경험한 대상자 비율은 30.00%로 전체의 1/3 정도인데 비해 비수급가구 자녀는 1.77%로 매우 낮았다. 교육연수는 비수급가구 자녀가 14.78년(표준편차 1.83)으로 수급가구 자녀의 13.15년(표준편차 1.66)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교육연수 구간별 분포 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즉 수급가구 자녀는 고졸 이하인 12년 이하 비율이 50.00%로 과반수인데 비해 비수급가구 자녀는 4년제 대학 이상인 16년에 46.90%가 해당하였다. 이상 기술분석 결과는 수급가구 자녀의 경우 어린 나이에 가구분리를 경험한 대상자와 교육연수가 짧은 저학력자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때이른 나이에 가구주가 되는 것은 낮은 학력 수준으로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김수정(2010)의 논의에 상응하는 결과일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가구분리 이후 독립한 청년의 빈곤가구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수급가구 자녀의 빈곤가구 이행 비율이 25.00%로 비수급가구 자녀의 빈곤가구 이행 비율의 8.55% 보다 2.92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비수급가구의 남성 비율이 67.26%로 수급가구 자녀의 5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비수급가구 자녀가 30.04세(표준편차 3.38)로 수급가구 자녀의 26.65세(표준편차 4.52)에 비해 3.39세 높게 나타났다. 연령구간별 분석에서는 수급가구 자녀는 24세 이하의 어린 연령층의 비율 35.0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비수급가구 자녀의 경우 오히려 30-34세 후기 청년 비율이 60.7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취업자 비율은 비수급가구와 수급가구 자녀가 각각 90.24%와 90.00%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비수급가구가 7.40%로 수급가구 자녀의 10.00%에 비해 낮게 분석되었다.

<표 3> 분석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N=359)

		비수급가구(%)	수급가구(%)	전체(%)	
분석 변수	수급가구 자녀 여부	비수급가구	100.00	-	94.43
		수급가구	-	100.00	5.57
	가구분리 연령	20세미만	1.77	30.00	3.34
		20-24세	23.60	40.00	24.51
		25-29세	55.75	20.00	53.76
		30-34세	18.88	10.00	18.38
		평균(sd)	26.56(3.14)	22.80(4.31)	26.35(3.33)
	교육연수	12년이하	16.22	50.00	18.11
		13-15년	36.87	35.00	36.77
		16년이상	46.90	15.00	45.13
		평균(표준편차)	14.78(1.83)	13.15(1.66)	14.69(1.86)
	청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91.45	75.00	90.53
		빈곤가구	8.55	25.00	9.47
	분석 대상	성	남	67.26	55.00
여			32.74	45.00	33.43
연령		20세미만	-	5.00	0.28
		20-24세	7.67	30.00	8.91
		25-29세	31.56	40.00	32.03
		30-34세	60.77	25.00	58.77
		평균(표준편차)	30.04(3.38)	26.65(4.52)	29.85(3.53)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90.24	90.00	90.22
		실업자	2.37	-	2.23
		비경제활동인구	7.40	10.00	7.54
전체		100.00	100.00	100.00	

2. 분석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수급가구 자녀의 빈곤이행에 대한 분석을 위해 모형에 투입되는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표 4>와 같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급가구 자녀일수록 빈곤가구 이행에 정(+)적 영향이 나타났고,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빈곤가구 이행이 감소하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수급가구 자녀와 가구분리 연령 간에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고,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 간에는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지만 비교적 낮은 -0.109에서 0.287에 분포하였다.

<표 4> 분석변수의 상관행렬

(N=359)

	빈곤가구 이행	수급가구 자녀	가구분리 연령	교육연수
빈곤가구 이행	1.000			
수급가구 자녀	0.129*	1.000		
가구분리 연령	-0.109*	-0.260***	1.000	
교육연수	-0.136*	-0.202***	0.287***	1.000

***p<0.001, **p<0.01, *p<0.05

3. 연구모형의 검증

가. 모형 적합도

<표 5>에서는 경로모형의 추정에 앞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χ^2 검증에서는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어 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chi^2=1.224$, $p=.269$). χ^2 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χ^2 값도 2이하의 기준을 충족시켰다(채구목, 2013: 299).

모형 적합도 CFI는 .997이었고, TLI는 .983으로 분석되어 0.95 이상의 좋은 적합도 권고 수준을 만족하였으며(배병렬, 2016: 70f), RMSEA는 .025로 0.05 이하의 매우 근사한(close fit)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였다(Browne & Cudeck, 1993; Steiger, 1989; 김수영, 2016: 168 재인용).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N=359)

χ^2 (df)	p	CFI	TLI	RMSEA
1.224(1)	.269	.997	.983	.025

주: Mplus는 범주형 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에 대해서도 χ^2 검정 값을 제시하여 주는데, χ^2 검정에는 DIFFTEST 옵션이 사용되고 있음

나. 경로계수 추정

본 연구의 경로모형은 <표 6>과 같이 추정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수급가구의 가족 배경은 청년의 빈곤가구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구분리 전 수급 여부가 청년의 빈곤가구 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분석대상자 연령이 본 연구와 다르기는 하지만 빈곤한 가족배경이 자녀의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손병돈, 2017; 임은의, 2017).

수급가구 자녀 여부가 빈곤가구 이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제외한 그 밖의 세부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수급가구 자녀일수록 가구분리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빠르고($b=-3.764$, $p<.001$), 교육연수는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1.091$, $p<.05$). 청년이 가구에서 분리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는 높아졌고($b=.145$, $p<.001$),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빈곤가구로 이행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119$, $b<.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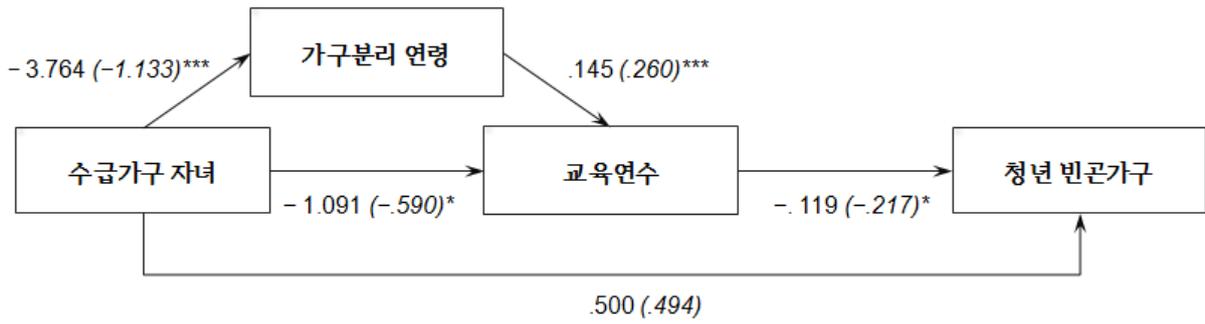
한편 <표 6>의 분석결과는 [그림 1]을 통해서도 확인하여 볼 수 있다.

<표 6> 수급가구 자녀의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대한 경로분석

(N=359)

경로	b	(β)	S.E
수급가구 자녀 → 청년 빈곤가구	.500	(.494)	.492
수급가구 자녀 → 가구분리 연령	-3.764***	(-1.133)	.977
수급가구 자녀 → 교육연수	-1.091*	(-.590)	.440
가구분리 연령 → 교육연수	.145***	(.260)	.031
교육연수 → 청년 빈곤가구	-.119*	(-.217)	.056

*** $p<0.001$, ** $p<0.01$, * $p<0.05$



***p<0.001, **p<0.01, *p<0.05

[그림 2] 다중매개모형의 경로계수

4.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는 <표 7>에 나타나듯이 편향 조정 부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 다중매개변인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¹⁰⁾ 부스트래핑 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어떤 모수라도 추정하고 표준오차를 계산하는데 쓰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간접효과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계산할 때 특히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영, 2016: 201).¹¹⁾

분석 결과 수급가구 자녀가 청년 빈곤가구로 이행하는 경로의 총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194, p<.05). 세부경로별 매개효과도 분석하였는데, 교육연수에 의한 간접효과(b=.129, p<.05)와 교육연수와 가구분리 연령의 다중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 각각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b=.065, p<.05). 간접효과의 크기에 있어 교육연수의 단일한 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는 총 간접효과의 2/3 정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부모의 빈곤으로부터 자녀의 빈곤 이행에 교육의 간접효과를 강조한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최필선·민인식, 2015; 손병돈, 2017; 임은의, 2017).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에 의한 다중매개의 간접효과는 총 간접효과의 1/3 정도를 설명하며 빈곤한 가족 배경 하에 발생한 이른 가구분리가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여 청년

10) 간접효과(indirect effect)와 매개효과(mediated effect)를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다(김수영, 2016: 232). 김수영(2016: 232 재인용)에 따르면, Holmbeck(1997)은 매개효과를 오직 한 개의 중재변수만 존재하는 경우로 상정하였다. 예를 들어 x와 y 사이에 두 개의 매개변수 m1과 m2가 연이어 있는 매개모형에서 x가 m1과 m2를 거쳐 y에 이르는 효과는 간접효과이기는 하지만 매개효과는 되지 않는 것이다. 매개효과는 간접효과의 특수한 형태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매개효과는 간접효과에만 해당된다.

1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추정치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여도 이들 두 변수의 곱은 얼마든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Lomnicki, 1967; Springer & Thoppson, 1966), 비모수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분포를 부스트래핑 방법에 의하여 표준오차를 계산하고 모수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델타방법(sobel test) 보다 간접효과 추정에 더 나을 수 있다(김수영, 2016: 201f 재인용).

빈곤에 이르게 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지지해주었다(정민우·이나영, 2011; 정수남 외, 2012; 김소영, 2017; 박애리 외, 2017).

<표 7>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N=359)

	b(β)	신뢰수준
총 간접효과 (total indirect)	.194(.192)*	[0.018, 0.431]
개별 간접효과 (specific indirect)		
수급가구 자녀 → 교육연수 → 빈곤가구 가구주	.129(.128)*	[0.009, 0.338]
수급가구 자녀 → 가구분리 연령 → 교육연수 → 빈곤가구 가구주	.065(.064)*	[0.010, 0.191]

*p<0.05

V. 논의

본 연구는 최근 77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며 이슈화 된 소득 1분위 청년 빈곤가구의 발생 경로는 기초보장제도의 맥락 하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패널조사 4-2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자녀의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미치는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빈곤가구로 이행한 수급가구 자녀의 비율은 비수급가구 자녀에 비해 2.92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이르는 경로분석에서 수급가구 자녀 여부가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는 교육연수의 단일 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와, 이른 가구분리와 교육연수의 다중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가 각각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넷째, 청년 빈곤이행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 중 교육연수의 단일 매개변인에 의한 효과는 66.7%이었고,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에 의한 다중매개변인에 의한 효과는 33.3%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가구의 가족배경이 교육연수를 매개로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미치는 경로가 확인됨에 따라 여러 연구들이 논의하였듯이 수급가구 자녀에게 교육 기회가 확대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교육의 지원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는데, 빈곤층 자녀의 빈곤 이행을 연구한 손병돈(2017)은 빈곤층 자녀를 위한 취학 전 보육 프로그램, 학교 적응 프로그램, 직업훈련,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의 기회평등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둘째, 기존 빈곤 연구들의 교육수준에 의한 간접효과 외에, 본 연구는 수급가구 배경이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연수의 다중매개변인을 경유하여 빈곤에 이르는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일찍 가구분리를 경험하는 청년 자녀에게 교육 연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이행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급가구 자녀는 빈곤한 가족 배경을 지닌 대상으로 가족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장가구로부터 분리될 때 가구와 제도로부터의 동시적 이탈을 경험하는 만큼, 탈수급 이력과 연동되는 완충적인 서비스를 통해 수급가구 자녀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연장하거나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수급가구 자녀들이 가구분리 이후 수급자격을 잃어버림으로써 다양한 혜택에서 급격하게 배제되거나 우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간 기초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급가구 자녀들의 가구분리를 통한 개별적인 제도 이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청년층을 둘러싼 기초보장제도의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이 제도에서 탈수급한 이후 일관성 있는 학력이나 경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완충적인 서비스 지원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77만원세대’ 현실로 왔다”, 2017.12.26일자.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구인회(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1), 1-29.
- 구인회·김정은(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27-49.
- 김영·황정미(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 김성훈(2015),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과 첫 취업 성과”, 『교육과학연구』, 46(1), 93-115.
- 김소영(2017), “남성 노숙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 실패와 원가족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9(3), 213-240.
- 김소정(20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행사에 관한 연구: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349-374.
- 김수영(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학지사.
- 김수정(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수정·김영(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0(1), 223-247.
- 김원정·류진석(2017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 전환 도래기 청년층의 가구분리에 미치는 영향”, 『2017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31-553.
- _____ (2017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근로능력자 전환 도래가 가구분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관점에서”, 『사회보장연구』, 33(4), 1-30.
- 김종성·이명훈(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90, 296-330.
- 김태완·최준영(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월호, 6-19.
- 남재욱·김영민·한기명(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 박동열·백성준·최동선·장명희·김미란(2010), 「전문계 고졸 인력 수요와 교육역량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소영(2015), “학력의 교육투자수익률과 학력 내 불평등의 추이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4(1), 167-192.
- 박애리·심미승·박지현(2017),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진입과 주거 불안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2), 1-20.

- 배병렬(2016), 「Mplus 7.0 구조방정식모델링」, 청람.
- 변금선(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1), 129-161.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빈곤층이 실제소득은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 2015.9.24일자.
- 보건복지부(2015a),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_____ (2015b),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급여 운영방안 질의응답집」.
- _____ (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_____ (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_____ (2018),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석상훈(2009), 노인빈곤의 동태적 분석, 『사회보장연구』, 25(4), 77-99.
- 손병돈(2017), “한국에서 빈곤은 세대간 이전되는가?”, 『사회보장연구』, 33(4), 163-184.
- 이태진 · 홍경준 · 김태완 · 최현수 · 김문길 · 김선미 · 김사현 · 최옥금 · 우선희 · 김효진 · 강성민 (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 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초보장 · 자활정책평가센터.
- 임은의(2017), “세대간 빈곤이행 연구: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7(1), 37-84.
- 정민우 · 이나영(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경제와 사회』, 89, 105-145.
- 정수남 · 권영인 · 박건 · 은기수(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 35-103.
- 채구목(2013),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로지스틱 회귀분석 · 생존분석 · 경로분석 · 구조방정식모델분석」, 양서원.
- 최동선(2010), “특성화고 취업지원 운영방안”, 『The HRD Review』, 14(3), 73-85.
- 최필선 · 민인식(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 통계청(2017), 「2017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지침서」.
-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노동패널 1-20차년도 User’s Guide」.
- Aassve, A., Billari, F. C., Mazzuco, S. & Ongaro, F.(2002), “Leaving home: A comparative analysis of ECHP dat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 259-275.
- Aassve, A., Davia, M. A., Iacovou, M. & Mencarini, L.(2005), “Poverty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risky situations and risky events”, Working Paper 2005-23, ISER.
- Berzin, S. C. & DeMarco, A. C.(2010), “Understanding the impact of poverty on critical events in emerging adulthood”, *Youth & Society* 42(2), 278-300.
- CSSP(2016), 20 Years of TANF: Opportunities to better support families facing multiple

barriers

DeMarco, A. C. & Berzin, S. C.(2008), “The influence of family economic status on home leaving patterns during emerging adulthood”, *Families in Society* 89, 208-218.

Goldscheider, F. K. & Goldscheider, C.(1998), “The effects of childhood family structure in leaving and returning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3), 745-756.

Iacovou, M. & Berthoud R.(2001), *Young people's live: a map of Europe*. University of Essex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acovou, M. & Berthoud R.(2001), *Young people's lives: a map of Europe*. University of Essex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Keller, T. E., Cusick, R. G. & Courtney, M. E.(2010), “Approach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 distinctive profiles of adolescents aging out of the child welfare system”, *Social Service Review* 81(3), 453-484.

Parisi, L.(2008), “Leaving home and the chances of being poor: The case of young peoples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Labour* 22, 89-114.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